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10일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도병두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4년 9월 1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 사생활 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 대상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2024. 7. 2. 개정됨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한 연가가산 및 특별휴가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근무시간 외 직원의 사생활 보장 규정 신설(안 제10조 신설)
-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경력 인정 범위를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, 연가가산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
(안 제11조 및 별표 4)

-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10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
(안 제15조제9항 신설)
-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,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 신설 및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
(별표 5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2024. 7. 18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도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 사생활 보장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 대상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, 유사경력으로 인한 연가가산 및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) 주요 내용

- 가)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(안 제10조)
- 나)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(안 제11조)
- 다)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특별휴가(안 제15조)

3) 검토 의견

- 참고로, 근무시간 외 사생활 보장 규정 자치구의의회는 서울시의회 및 8개구이고,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는 종로구의회(3일) 1개구이며,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출산 시 서울시의회 및 8개구에서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,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에는 13개구에서 3일 부여, 서울시의회 및 12개구에서는 5일을 부여하고 있음.

- 관련 법령의 근거규정 및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,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